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I.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
 - 2) 장기 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
 - 3)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II.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있다.

III. 이용계약

1.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2.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계약 당사자
 - 2) 계약 기간
 -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3.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IV. 월 이용료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기관이 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V.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VI.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VII.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VIII.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 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3)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4) 이용계약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였을 때
 - 5)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수급자가 기관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 6)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7)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8)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급여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2,512,900 원	2,331,200 원	1,528,200 원	1,409,700 원	1,208,900 원	676,320 원
20% 추가	3,015,480원	2,797,440원	1,833,840원	1,691,640원	1,450,680원	-

주야간보호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 20% 범위 내 추가 산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시간	등급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15%	감경 40%(9%)	감경 60%(6%)
3시간 미만	33,460 원	5,019 원	3,011 원	2,008 원	1,911 원
	30,980 원	4,647 원	2,788 원	1,859 원	1,769 원
	28,590 원	4,289 원	2,573 원	1,715 원	1,633 원
	27,300 원	4,095 원	2,457 원	1,638 원	1,559 원
	25,990 원	3,899 원	2,339 원	1,559 원	1,484 원
	25,990 원	3,899 원	2,339 원	1,559 원	1,484 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1,820 원	6,273 원	3,764 원	2,509 원	2,389 원
	38,720 원	5,808 원	3,485 원	2,323 원	2,211 원
	35,740 원	5,361 원	3,217 원	2,144 원	2,041 원
	34,120 원	5,118 원	3,071 원	2,047 원	1,948 원
	32,490 원	4,874 원	2,924 원	1,949 원	1,855 원
	32,490 원	4,874 원	2,924 원	1,949 원	1,855 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060 원	8,409 원	5,045 원	3,364 원	3,202 원
	51,930 원	7,790 원	4,674 원	3,116 원	2,965 원
	47,940 원	7,191 원	4,315 원	2,876 원	2,737 원
	46,300 원	6,945 원	4,167 원	2,778 원	2,644 원
	44,650 원	6,698 원	4,019 원	2,679 원	2,550 원
	44,650 원	6,698 원	4,019 원	2,679 원	2,550 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9,730 원	10,460 원	6,276 원	4,184 원	3,982 원
	64,590 원	9,689 원	5,813 원	3,875 원	3,689 원
	59,640 원	8,946 원	5,368 원	3,578 원	3,406 원
	58,010 원	8,702 원	5,221 원	3,481 원	3,313 원
	56,360 원	8,454 원	5,072 원	3,382 원	3,218 원
	56,360 원	8,454 원	5,072 원	3,382 원	3,218 원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76,820 원	11,523 원	6,914 원	4,609 원
	2등급	71,160 원	10,674 원	6,404 원	4,270 원
	3등급	65,750 원	9,863 원	5,918 원	3,945 원
	4등급	64,090 원	9,614 원	5,768 원	3,845 원
	5등급	62,460 원	9,369 원	5,621 원	3,748 원
	인지지원등급	56,360 원	8,454 원	5,072 원	3,382 원
13시간 초과	1등급	82,370 원	12,356 원	7,413 원	4,942 원
	2등급	76,310 원	11,447 원	6,868 원	4,579 원
	3등급	70,500 원	10,575 원	6,345 원	4,230 원
	4등급	68,860 원	10,329 원	6,197 원	4,132 원
	5등급	67,240 원	10,086 원	6,052 원	4,034 원
	인지지원등급	56,360 원	8,454 원	5,072 원	3,382 원

주야간보호 비급여비용(1일당)

	산출근거	금액
식대	2,000원×1식=2,000원	2,000원
간식비	식대에 포함	

김천행복한요양원